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27호 2022. 8. 29.(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27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27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283호(옥련대진빌라주변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안) 공람·공고) 2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28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6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56호(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 .. 52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일자리와 예산, 주민생활 밀접업무, 도시기반시설 업무를 우선 배치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 개편

3. 주요내용

☐ 국 직제변경 및 폐지

○ 국 명칭 및 직제 변경

- 행정안전국 ⇨ 기획경제국(안 제4조)
- 주민복지국 ⇨ 복지환경국(안 제5조)
- 경제환경국 ⇨ 도시교통국(안 제5조의 2)
- 도시관리국 ⇨ 자치행정국(안 제6조)

○ 교육문화자치국 폐지

☐ 사업소 신설(안 제2조, 제10조~제12조)

○ 도서관정책과 폐지 및 사업소(연수청학도서관)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 (☎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mail : kjj411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 기관”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실·단·과”를 “단·실·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로 한다.

제4조 제목 “(행정안전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도시교통국) ① 도시교통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도시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 과 같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 와 같다.

제7조제2항 중 “ “별표 6” 과” 를 “ “별표 5” 와” 로 한다.

제4장(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제5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으로 하고, 제9조 다음에 제4장(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0조(설치) ① 법 제127조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6” 과 같다.

제11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사업소장” 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하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2(중전의 별표 3)부터 별표 4(중전의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상황실란 중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재정지원반란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홍보·전산지원반란 중 “홍보미디어실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 을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총괄부서의 장” 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을 “예산 담당 부서의 장” 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홍보미디어실장” 을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 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연수구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 를 “교육지원과” 로,

“위생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

별표 5의 비고란 중 “홍보미디어실”을 각각 “홍보미디어과”로,
“자원순환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5호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을 “대표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 중 “구청장” 을 “관장” 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청장” 을 각각 “관장” 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구청장” 을 “관장” 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구청장” 을 “관장”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을 “()도서관장” 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을 “()도서관장” 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을 “()도서관장” 으로 한다.

【별표 1】

사 무 분 장 표 (제 4 조 관 련)

국 명	분 장 사 무
기획경제국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5.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8.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9. 물가안정·소비자보호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연료수급 및 유류·가스에 관한 사항 12. 농·축·수산 및 양정 유통에 관한 사항 13.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14. 노사지원 및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15. 경영수익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 16.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7.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 19.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20.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1.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22.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23.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25.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26.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7.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28.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29.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0.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31.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32.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기획경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2】

사 무 분 장 표 (제 5 조 관 련)

국 명	분 장 사 무
복지환경국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서비스 제공·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행정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5.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6.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9.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0. 긴급복지지원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자활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4. 여성·가족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저출산대책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8.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19.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0.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1. 폐기물에 관한 사항 22.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23.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24.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2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 26.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 28. 환경보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30.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1.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2. 저탄소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33.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복지환경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3】

사 무 분 장 표 (제 5 조 의 2 관 련)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교통국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전산화 발급 업무 9. 건축행정정책 정보화 업무 10.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거급여 사업에 관한 사항 15.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17.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8.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0.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 증대 전반에 관한 사항 21. 녹지조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2.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23.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0.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31.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3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33.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4.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6.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37.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38.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39.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 40.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4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2.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43.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등에 관한 사항 44. 그 밖에 도시교통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4】

사 무 분 장 표 (제 6 조 관 련)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6.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7.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8.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9.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1.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13.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14.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5.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16.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 17.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18.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19.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 20. 홍보기획, 보도, 미디어활동, 통신지원에 관한 사항 21. 신문 및 방송 보도와 관련한 홍보에 관한 사항 22. 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5.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6.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7.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28.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9.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31.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2. 그밖에 다른 국·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 6】

도서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 구역
연수청학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연수구 일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부서장, <u>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 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단·과의 사무분장</u>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 ----- ---, -----, <u>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u> ----- <u>단·실·과</u> ----- -----.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u>	제3조(국 등의 설치) ----- ----- <u>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u> -----.
제4조(<u>행정안전국</u>) ① <u>행정안전국</u> 에 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u>행정안전국장</u> 의 분장사무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u>기획경제국</u>) ① <u>기획경제국</u> 에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u>기획경제국장</u> ----- -----.
제4조의2(<u>교육문화자치국</u>) ① <u>교육문화자치국</u> 에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도서관정책과를 둔다. ② <u>교육문화자치국장</u> 의 분장사무	<삭 제>

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의2(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건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간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7조(설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신 설>

제5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건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도시교통국) ① 도시교통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도시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설치) ① (생 략)

② -----

----- “별표 5”와 ----.

제4장 사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2년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 등을 반영하고, 현안 업무 과중 부서에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979명 ⇨ 1,006명 (增 27명)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안 [별표2]) : 별정직 공무원 추가
-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안 [별표3])
 - ▶ 정원 총계 : 979명 ⇨ 1,006명 (+27)
 - ▶ 일반직 계 : 974명 ⇨ 1,000명 (+26)
 - 6급 이하 : 907명 ⇨ 933명 (+26)
 - ▶ 별정직 계 : 3명 ⇨ 4명 (+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 (☎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mail : kjj411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79명” 을 “1,006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57명” 을 “98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2명” 을 “23명” 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3% 이내	30% 이내	5% 이상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 구 관	연 구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25% 이내	25% 이내	25% 이내	25% 이상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 계	1,006	638	23	89	26	230
정무직 계	1	1	-			
구청장	1	1	-			
일반직 계	1,000	632	23	89	26	230
3급	1	1	-			
4급	7	5	1	1		
5급	59	32	2	9	1	15
6급 이하	933	594	20	79	25	215
연구직 계	1	1	-			
연구사	1	1	-			
별정직 계	4	4	-			
5급 상당	1	1	-			
6급 상당 이하	3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
<u>979명</u> 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 <u>1006명</u> -----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
다음과 같다.	-----.
1. 집행기관 : <u>957명</u>	1. ----- : <u>983명</u>
2. 의회사무기구 : <u>22명</u>	2. ----- : <u>23명</u>

옥련대진빌라주변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안)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옥련대진빌라주변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를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2년 8월 25일 ~ 2022년 9월 15일(14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 연수구청 4층 도시주택과(☎032-749-8602),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70, 아리랑빌딩 202호, ☎ 032-859-0888)
3.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공람
4. 의견서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4층 도시주택과
5.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내용
 - 가. 사업의 명칭 : 옥련대진빌라주변 재개발정비사업
 - 나. 시 행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 다. 시 행 면 적 : 8,548㎡
 -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 마. 사업시행자
 - 1) 명칭 :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영백)
 -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70, 아리랑빌딩 202호
 - 바.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1) 건폐율 : 23.14%, 용적율 : 243.9282%, 연면적 : 27,967.06㎡
 - 2) 아파트 3개동(지상20층/지하2층) 2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3) 용도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4) 건축면적 : 1,823.34m²

5)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6) 주차대수 : 255대

사.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도로 217m², 공원 379m², 주차장 71m²

자. 주요 변경내용

-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흙막이 공법 변경

6. 관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의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한 관계기관(부서)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공 랑 의 건 서						
사 업 명		옥련대진빌라주변 재개발정비사업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의견 제출인	이해관계	조합원() / 토지및건축물소유자() / 세입자() / 기타권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권리명세					
공람의견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 위탁기간 관련 조문 개정 필요
 - ※ 개정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계약기간 기존 3년 ⇒ 변경 5년
- 청소년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 대관 절차 및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12조)

- 시설 사용 절차 및 사용료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기간 관련 조문 개정(안 제13조 제2항)
- 청소년시설 3년 이내 ⇒ 청소년시설 3년 이내(청소년상담복지센터 5년 이내)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2.(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여성 아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032-749-6752), 팩스(032-749-673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를 “「청소년 기본법」” 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적용범위)” 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이나 조례” 를 “조례” 로 한다.

제4조 중 “별표와” 를 “별표 1과”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설을” 을 “청소년시설을” 로, “시설 이용자” 를 “이용자” 로 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6조 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종전 제16조는 삭제한다.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일주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 허가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허가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 · 변경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납입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으로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
2. 구의 사정으로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
3. 청소년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 : 전액반환
4. 청소년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사용예정일 3일 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5. 사용예정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정치·종교적인 목적의 사용이라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중전 제6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1”로,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시설”로, “위탁(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를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운영”을 “위탁운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중전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를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로, “청소년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제1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중전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탁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탁하고자 하는 청소년시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구 소속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2. 청소년분야 전문가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안건 심사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중전 제12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시설”을 각각 “청소년시설”로 한다.

제22조(중전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의 적용례) 제13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청소년시설 현황(제4조 관련)

연 번	시 설 명 칭	주 소	비 고
1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연수구 앵고개로 132	
2	연수 청소년문화의집	연수구 비류대로 299	
3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연수구 앵고개로 235	
4	연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수구 원인재로 283	
5	연수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수구 비류대로 429	

[별표 2]

청소년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단위 : 원)

구 분	시 설	청소년	일반	비 고
춘절기(4월~6월), 추절기(9월~10월)	강 당	무료	20,000(2시간)	
	강의실		10,000(2시간)	
	풋살경기장		10,000(2시간)	
하절기(7월~8월) 동절기(1월~3월, 11월~12월)	강 당		40,000(2시간)	냉난방비 포함
	강의실		20,000(2시간)	
	풋살경기장		10,000(2시간)	

2.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단위 : 원)

구 분	시 설	청소년	일반	비 고
춘절기(4월~6월), 추절기(9월~10월)	다목적교육실	무료	20,000(2시간)	
	프로그램실		10,000(2시간)	
하절기(7월~8월) 동절기(1월~3월, 11월~12월)	다목적교육실		40,000(2시간)	냉난방비 포함
	프로그램실		10,000(2시간)	

※ 청소년은 무료로 대관할 수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료 부과

※ 기준시간(2시간) 초과 시 시간 단위를 환산하여 추가 계산함

청소년시설 사용 신청서

[illegible]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시설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 :)

사 용 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20 . . . : 부터 ~ 20 . . . : 까지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사 용 료		일금 원 (₩)		
허 가 조 건		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을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다. 3. 사용 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대시설(전시물 포함)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사용 종료 후 원상 복구해야 하며, 지체 없이 설치한 부대시설을 인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허 가 일	20 . . .	허가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 명			
	생년월일			
사용 목적				
감면 종료		☐ 전액감면 ☐ 50% 감면		
감면 사유		☐ 구 주관 ☐ 법률·조례 ☐ 국가·자치단체 ☐ 기타		
증빙자료 내역 (별도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 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 · 복지·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청 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 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설 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 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상담시 설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이란 청소년 활동·복 지·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인 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 <u>청소년 기본법</u> 」, -- -----, ---- -----, ----- ----- ----- -----, ----- -----, ----- ----- --.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례에 따른다.	제3조(<u>다른 조례와의 관계</u>) ----- ----- <u>조례</u> ----- -----.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 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 칭과 그 위치는 <u>별표와</u> 같다.	제 4 조 (설 치) ----- ----- -- <u>별표 1과</u> ----.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의 활동, 교육, 문화,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 -----, -----,
----- 청
소 년 시 설 을

-----, 이용자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
용일 일주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 허가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허가 취소) ①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사
용을 중지·변경시킬 수 있다.

<신 설>

<신 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조
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
능 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
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납입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
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
사 : 전액 감면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
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
우 : 전액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

<신 설>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 규정에 의거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으로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

2. 구의 사정으로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

3. 청소년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4일전까지 신고한 경우 : 전액반환

4. 청소년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신 설>

것을 개시일 3일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5. 사용예정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별표의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이하 "
위탁운영단체"라 한다)하여 운
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
다. 다만, 공개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
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정치·종교적인 목적의 사용
이라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 목적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
----- 별표1의 청소년시설--
----- 위탁
-----.

②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은 3
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
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
위탁운영-----
----- 「인
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

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위탁운영단체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부서국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

제14조(위탁운영단체 선정) ①
-- -----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 -----

-----, 제1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 5. (현행 제7조제2항 각 호와 같음)

제1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에 따른 위탁운영단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청소년 전문가, 연수구의회 구의원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탁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탁하고자 하는 청소년시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구 소속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2. 청소년분야 전문가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안건 심사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 제11조 (생략)

제12조(위탁운영단체의 의무) ①
(생략)

② 위탁운영단체는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위탁운영단체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탁운영단체는 위탁받은 시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제19조(위탁운영단체의 의무) ①
(현행 제12조제1항과 같음)

② ----- 제18조-----

-----.

③ ~ ④ (현행 제1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 청
소 년 시 설 ,

-----,
-----.

⑥ ----- 청

설의 개·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위탁운영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⑦ (생략)

제13조 ~ 제14조 (생략)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① (생략)

1. 위탁운영단체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 3. (생략)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위탁운영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제8조를 준용하여 구청장이 정하

소년시설-----

-----.

⑦ (현행 제12조제7항과 같음)

제20조 ~ 제21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① (현행 제15조제1항과 같음)

1. ----- 제17조제2항 -----

2. ~ 3. (현행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4. 그 밖에 -----

② (현행 제15조제2항과 같음)

③ -----

----- 30일 전 -----
-----.

<삭제>

<u>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u> <u>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u> <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u> <u>으로 정한다.</u>	<u><삭 제></u>
---	---------------------------

[붙임]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286호		2. 구분 (o표시)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 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									
	○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부서명 : 여성아동과 ○ 과 장 :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 담 당 : 청소년팀장 배해연 ○ 담당자 : 지방행정주사보 윤아영										
4. 근거법령 등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0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연수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6. 규제존속기한 등	○ 규제존속기한 : 규제 폐지 시까지 존속 ○ 포괄적 네거티브 적용 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시설 사용 신청 절차 및 사용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6조~제12조, 별표2 등) - 사용 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 취소 - 사용료 부과·감면·반환 - 사용자의 의무, 시설 사용 제한										
8. 규제체계도	○ 지정절차 신 청 민원인 ⇒ 접 수 연수구 청소년시설 ⇒ 사용허가 연수구 청소년시설 ⇒ 사용료 부과 연수구 청소년시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 청소년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시설 사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 상기 조례는 공공시설 사용의 허가와 허가취소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반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

- ☐ 청소년시설의 사용 신청·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상기 조례가 미개정될 경우 대체할 수단은 없으며, 중복되는 기존 규제는 없음

3.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 ☐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함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 별도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청소년시설 사용 및 허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

다. 규제영향 분석

- ☐ 기술영향평가 : 해당없음
-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 중소기업 영향평가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정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목적과 수단이 타당함

나.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재정적 집행가능성 및 능력 등)

- ☐ 청소년시설 사용 및 허가에 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근거 확립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 8. 29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제1조(목적)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변경)

특정구역과 정비시범구역이 중복 지정된 구역에서 간판정비사업 미 시행으로 정비시범구역지정 일부 변경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 한다. ([붙임] 별도 도면 표기)

연번	기정	변경	비고
1	옥골구역 도시개발구역	폐지	2017.11. 7 (2017-100호)
	동춘1, 2구역 도시개발구역		
	연수동 600, 600-1, 600-2, 600-3, 600-4, 600-5, 600-6, 631, 631-1, 631-2, 631-3, 631-4, 631-5, 631-6, 597-3, 597-4, 599, 599-1, 599-5 청학동 503-1, 503-3, 503-4	변경없음	
연번	기정	변경	비고

2	동춘동 936, 936-1, 936-2, 936-3, 936-5, 936-6, 936-7, 936-8, 937	변경없음	2017.11. 7 (2017-100호)
3	연수동 634 (우성2차아파트 상가)	변경없음	
4	옥련동 194-4, 194-5, 194-42	변경없음	
5	연수동 582-2 (연수1차시영아파트 임대상가 401동, 402동)	변경없음	
6	연수동593-3외 2필지, 연수동593외 2필지, 연수동596외 1필지, 청학동499외 1필지 (연수푸르지오 1,2,3,4단지), 동춘동 926 (스퀘어원)	폐지	

제3조(표시방법의 강화 또는 완화 내용)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제4조부터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판의 총수량)

-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가로형 간판 1개와 돌출간판 1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경우 벽면이용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등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 ② 광고물 등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의 다른 광고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신고 등)

- ①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 등은 이 고

시 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벽면이용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벽면이용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의 7층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단, 1층의 경우 파사드를 이용한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가로형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점포폭 이내, 세로크기는 1층은 50cm 이내로 하고, 1층 증가시마다 5cm 증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출간판 1면의 면적은 업소당 2㎡ 이내로 한다.
2.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연립형 또는 일직선상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이·미용업소의 표지는 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개의 업소만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2. 지주이용간판은 1개 건물에 1개만 표시하되 연립형의 종합싸인보드 형식으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업소당 표시면적은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고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10미터 이내로 한다.
3. 4개 업소 이상을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광고물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제10조(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특례) 건물의 특성 및 간판의 디자인상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 및 조례 표시방법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된 광고물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기간 동안 표시할 수 있다.
- ③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붙임1】

정비구역 지정현황

1. 연수동 600번지 등



2. 동춘동 936번지 등



3. 연수동 634



4. 옥련동 194-4번지 등



5. 연수동 582-2 연수1차시영아파트 임대상가

